

계좌간 자금대체 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함)의 거래고객이 회사의 동일고객 계좌 상호간에 자금 대체 거래 (이하 '자금대체거래' 라 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계좌간 자금대체거래 : 고객이 당사에 개설한 동일인 명의 계좌중 고객이 지정한 계좌 상호간에 고객이 전표, 전화, 인터넷통신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한 신청에 의하여 현금(또는 대용증권)의 입출금(또는 입출고)을 수행하는 거래
- ②계좌번호 : 당사에 개설한 모든 상품 계좌로서 고객과 계좌 개설명칭이 일치하는 실명계좌의 번호
- ③비밀번호 : 계좌개설시 고객 자신이 설정한 숫자 또는 영문자
- ④동일인 명의의 계좌 : 당사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계좌

제2조(자금 대체거래 계약의 성립) 고객은 계좌간 자금대체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 약관을 사전 숙지한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의 신청내용이 당사 전산상 정상적으로 등록 완료된 시점부터 계좌간 자금대체 거래 계약이 성립된다.

- ①자금대체거래 계약은 고객이 자금대체거래 대상계좌의 등록인감(또는 서명감)을 날인 (또는 서명)한 소정의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
- ②당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 직접 계좌간 자금대체 서비스신청을 입력하는 방법

제3조(자금대체 거래 대상계좌) 자금대체거래 대상계좌는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동일인 명의의 계좌로서, 계약 시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한다.

제4조(자금대체 거래 금액) 자금대체거래 금액은 회사에서 정한 출금계좌의 인출가능 현금 (또는 대용증권)범위 내에서 고객이 지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자금대체 거래의 신청) 자금대체계약을 체결한 계좌 상호간의 대체거래 신청은 서면, 유선, 또는 PC 등을 이용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신청시간은 당사가 정하는 시간에 따른다.

제6조(본인확인) ①계좌간 자금대체 요청시 계좌번호, 계좌명, 비밀번호가 이미 당사에 등록된 것과 일치할 경우에는 이용자를 신청인 본인으로 간주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는 당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환전에 관한 사항) 해외파생상품계좌의 입출금과 관련하여 환전의 시기 및 방법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면책사항)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①고객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
- ②전산 장애, 회선 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거나 중단되어 발생한 손해

③고객의 부주의로 자금대체계좌의 비밀번호 등 기밀사항이 타인에게 누출되어 발생한 손해

④기타 회사가 신의 성실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손해

제9조(자금대체거래 이용계약의 해지) 자금대체거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금대체 대상계좌가 이관, 폐쇄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제9조의2 (서비스제공 중지) 고객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계좌간 자금대체 서비스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①계좌간 자금대체 대상계좌가 폐쇄, 통합, 사고 신고된 경우
- ②계좌간 자금대체 대상계좌의 비밀번호 등의 비밀사항이 타인에게 유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기타 법적 지급제한 및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전화 등의 녹음) 거래고객과 회사는 자금대체 거래업무와 관련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

제11조(약관변경 통지) ①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 내용을 1개월간 게시하고,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 2항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약관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약관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